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서남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공사(장기계속)〕

□ 점검일시 : 2020.03.05 (목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김동수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설비부)

- 위험물 보관소의 수량을 정확히 표기 및 일치시켜 관리하고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.(신너, 방수액 등은 창틀이 좁아 손으로 꺼낼 수 있으므로 별도 조치 요망)
 - 위험물은 MSDS를 표기 부착하여 관리하고 소화기를 비치할 것
 - 위험물을 보관할 때 공병 및 실병을 구분 표기하고 캡을 씌워 보관할 것.
 - 위험물 보관 주변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불필요한 자재를 제거할 것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설비부)

- 소화기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므로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한 소화기는 모두 정비할 것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설비부)

- 폐단열재 적치장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
 - 사용 잔재는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즉시 반출할 것(정리정돈 불량 등)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감전재해 예방(설비부)

- 용접 충전부 및 어스집계의 전선은 절연조치가 미비하니 정비하시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



○ 감전재해 예방(설비부)

- 가설전선은 전선거치대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치시킬 것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



○ 작업장조도 확보(설비부)

- 작업장 및 계단의 조도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투광시설 등을 갖추어 조도를 확보할 것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4(작업자 통로확보 및 작업안전 기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설비부)

- 난간의 자재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낙하방지 조치를 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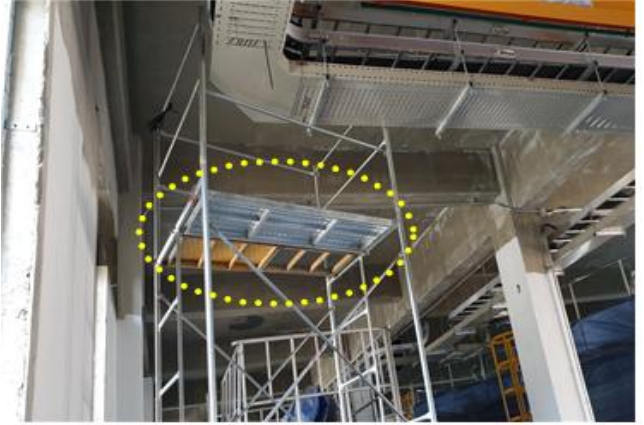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1(낙하·비래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설비부)

- 낙하 및 비래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 동식 틀비계 상단부에 폭목을 설치할 것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1(낙하·비래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설비부)

- 동바리 또는 난간에서 제거한 클램프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리할 것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45(작업자 통로확보 및 안전작업기준)

